

공 시 송 달 공 고

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, 주소·거소·영업소 또는 사무소 불명,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서류의 명칭 :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
2. 공 고 기 간 : 2024. 7. 17. ~ 2024. 7. 31.(14일간)
3. 공고방법 :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
4. 공시송달 대상자 : 붙임(정*호 등 2)
5. 공시송달내용

-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의거 같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·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.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하기 전 체납된 지방세의 납부를 촉구하오니 2024년 9월 30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만약 귀하(귀 법인)가 위 기간 내에 체납액 납부 등으로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면 세관장에게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탁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기타 공고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대문구청 징수과 38세금1팀 (☎ 02-330-1668)으로 연락바랍니다.

2024. 7. 17.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